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3. 27 선고 2023가단5397068 판결 [건물명도 등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의
담당변호사 추승우

피 고 B
변 론 종 결 2024. 3. 6.
판 결 선 고 2024. 3. 27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15,06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. 12. 2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-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.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, 2023. 8. 25.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505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.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최미영

별지